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10일 14시 2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에너지정책과	3
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	3

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

2017.07.04 조회수 287 등록자 김보영
10:40

✓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

✓ 민원내용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

✓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

✓ 구비서류

1.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립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
2. 주유기 명세서 1부
3.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
4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✓ 처리부서 에너지정책과

✓ 협의부서

✓ 접수 에너지관리팀

✓ 수수료 등록신청 수수료 20,000원

✓ 처리기간 7일


✓ 기타사항

✓ 흐름도

✓ 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별지 제7호서식] 석유판매업(주유소) (등록신청서, 조건부 등록신청서)(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).hwp (475 hit/ 17.0 KB) ↓

[미리보기](#)

이전글

다음글

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·항공유판매업·특수판매소...

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등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